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토지소유권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과 설계·시공의 기준이 되는 지형측량 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가 사업승인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공사 후 재시공 또는 불필요한 실시설계 변경이나 잔지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반영 하도록 「용지규정 시행세칙」이 2012. 10. 15일자로 기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 사규인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을 동히 개정하여 원활히 연동·운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성과의 반영 (제11조의2 신설)

-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가 납품되면 지형실측도와 대조하여 확인되는 오차를 보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반영함으로써 보상경계와 시공경계의 일치를 유도함.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예정지적좌표도작성측량성과의 반영) 지역본부장은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실시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의 성과품이 납품되면 착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형실측도와의 오차를 보정하여 사업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제11조의2(예정지적좌표도작성 측량성과의 반영) 지역본부장은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2 호에 따라 실시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의 성과품이 납품되면 착 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 른 시일 내에 지형실측도와의 오차 를 보정하여 사업지구 지정변경,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반 영하여야 한다.	보상경계와 시공경 계의 오차를 계획단 계에서 소거하여 불 필요한 재시공, 추가 보상, 잔지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